##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9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신동욱・유용원・김승수

박정하 • 강대식 • 박준태

권성동 · 김은혜 · 이달희

서지영 · 김예지 · 서천호

김상훈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법률 제 호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가혹행위) ① ~ ② (생	제62조(가혹행위)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
	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